성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발 의 자 : 백철현 의원

2. 개정이유

○ 「공무원연금법 시행령」 제45조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의 정비와 그 밖에 불명확한 조문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「공무원연금법 시행령」 제45조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“폐질등급”을 “장애등급”으로 수정함(안 제5조제1항)

○ 그 밖에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4. 관련법률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34조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5조

○ 「공무원연금법 시행령」 제45조,

▢ 본 조례 개정안은 『공무원연금법』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문 정비와 그밖에 불명확한 조문을 명확히 정비하는 내용으로 『폐질등급』을 『장애인등급』으로 수정하고 그 밖에 불명확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 개정안은 자치입법 입안심사 기준에 합당함으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 고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